



1-5 주의점

(1) 신고의 의무

체류자격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입국관리국에의 신고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14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14 일을 지나면 형사형벌의 대상 됩니다.

취로 체류자격인 사람이라면 근무처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며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혼인한 사람, 배우자의 관계로 가족체재나 특별활동을 인정 받은 사람은 이혼이나 사별했을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는 살고 있는 지구정촌의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5-2 체류상황에 관한 신고 참고)

(2) 상시휴대의 의무

「체류카드」에는 상시 휴대의무가 있으므로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휴대해야 합니다. 「체류카드」는 경찰관이나 입국관리 직원이 제시를 원할 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대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체류자격의 취소 이유, 강제퇴거 사유, 벌칙

상기 (1)(2)와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체류자격의 취소 사유, 강제퇴거 사유, 벌칙이 새롭게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취로조장죄에 대해서는 피고용자가 불법취로활동을 하고 있다고 고용주가 몰랐던 경우에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체류자격의 취소 사유】

- ① 부정한 수단으로 체류특별허가를 받은 것
- ② 배우자로서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고 체류하는 것
(※)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는 자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체류자격의 취소를 행하지 않는 구체적인 예에 관하여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info/120703_01.html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
(※) 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체류자격의 취소를 행하지 않는 구체적인 예에 관하여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info/120703_02.html
- ④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정해져 있는 체류자격(입관법 별표 제 1 의 체류자격)에 의해 체류하면서, 실제로는 체류자격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활동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려고 체류하는 경우

다언어 생활정보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 외국인주민기본대장제도 (※2012.7.9 부터의 내용입니다)

▶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 외국인주민기본대장제도 TOP 으로

【새롭게 추가된 강제퇴거 사유】

- ① 체류카드의 위변조 등의 행위를 하는 것
- ② 허위신고 등에 의해 징역이상의 형에 처한 것
(※) 고용주가 고용하는 외국인이 불법취로자인 것을 몰랐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체류자격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인 경우, 불법취로 조장행위는 강제퇴거사유에도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처벌】

- ① 중장기체류자의 각종신고에 관하여 허위신고 · 신고의무위반, 체류카드의 수령 · 휴대 · 제시의무를 위반하는 것
- ② 체류카드의 허위조 등의 행위를 하는 것
- ③ 거짓 그 외의 부정한 수단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상륙한 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체류기간 갱신 허가를 받은 자, 영주 허가를 받은 자 등

■참고: 법무성 입국관리국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여러분께 2012년 7월 9일 (월) 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시작!」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pdf/NewResidencyManagementSystem-\(JA\).pdf](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pdf/NewResidencyManagementSystem-(JA).pdf)

